자연재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 콘텐츠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재난 관리체계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대비 조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취해지는 응급조치 및 긴급구조 활동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방법,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와 그에 따른 비용 및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 등 자연재해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재해 1
1. 자연재해 개관 4
1.1.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4
1.1.1. 자연재해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4
2.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8
2.1.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8
2.1.1. 재해영향평가등 8
2.1.2. 재해원인 조사·분석 11
2.2.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12
2.2.1.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12
2.2.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14
2.3.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18
2.3.1. 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18
2.3.2.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20
2.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22
2.4.1.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22
2.4.2. 재난대비훈련 24
2.5. 재해별 예방 대책 26
2.5.1. 풍수해 26
2.5.2. 설해 33
2.5.3. 가뭄, 폭염 및 한파 37
3. 자연재해 대응 40
3.1. 재난 예보·경보 체계 40
3.1.1.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40
3.2.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41
3.2.1.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41
3.2.2. 응급조치 등 43
3.3. 긴급구조 45
3.3.1. 긴급구조활동 45
4. 자연재해 피해 복구 49
4.1.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49
4.1.1. 재난피해 조사 49
4.1.2. 재해복구 50
4.2. 특별재난지역 52
4.2.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52
4.3. 비용 등의 지원 53
4.3.1.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53
4.3.2. 복구비 지원 55

1. 자연재해 개관

1.1.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

1.1.1. 자연재해 개념 및 재난관리체계

자연재해의 개념

자연재해란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 자연재난 별 국민 행동요령에 관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행동요령 → 국민행동요령 → 자연재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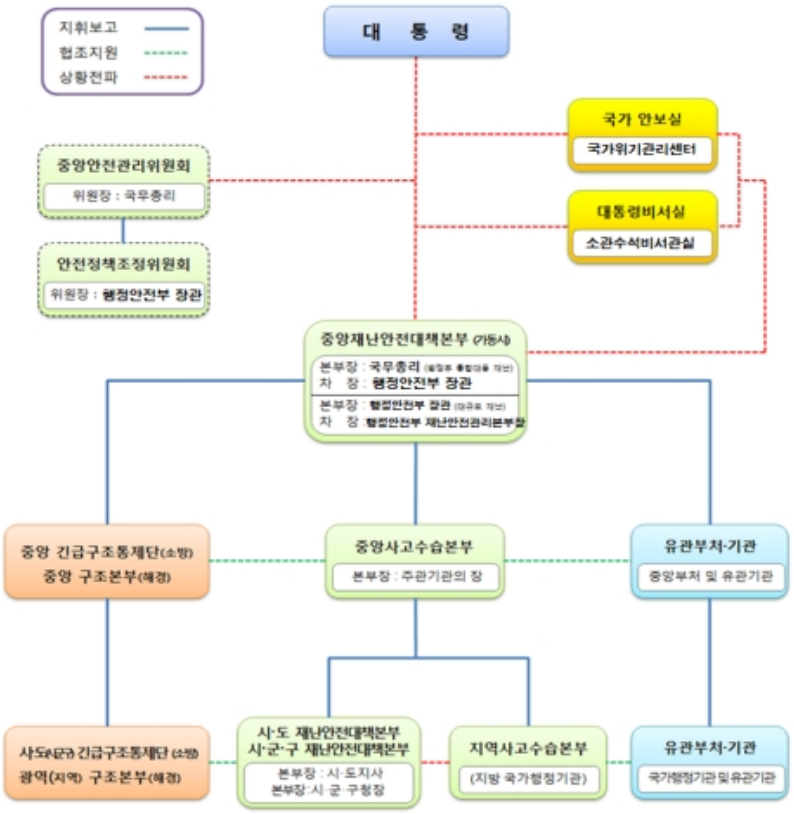
국가재난관리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조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난상황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심의·협의를 위한 기구

기구	기능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를 두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8.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9.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3조제12호).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4., 5., 8., 9., 10.에 대한 사전 조정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구

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함)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함)를 두며,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제3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함)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함)의 건의를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위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 ▪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중앙 및 지역사고 수습본부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6항).

2.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2.1. 재해영향평가등과 원인조사

2.1.1. 재해영향평가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 ■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
> ■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재해영향평가등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함)
-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정하는 검토 사항

>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6항).

협의결과의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해영향성검토: 30일
- 재해영향평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2. 위의 1.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 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협의 내용의 이행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후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4항).

재해영향평가 관련 Q & A

Q.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이며 어떤 협의를 하는 건가요?

A.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 착공 등의 통보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협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2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3항).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1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3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4항).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2.1.2. 재해원인 조사·분석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

재해원인 조사 및 분석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다음의 기관·단체·법인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함)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함)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제1항).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토지 출입 등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1항).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2항).

▪ 위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3항).

2.2. 재해위험 지역·지구 등의 지정

2.2.1.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관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지역
-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관계인에 대한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 공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

특정관리대상지역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2항).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구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함)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구분	내용
정기안전점검	▪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반기별 1회 이상
	▪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1회 이상
	▪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월 2회 이상
수시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현황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정비·보수 등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 현황

2.2.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정보 열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고시정보—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예시(경기 구리시 고시 제2020-97호)>



필요 조치의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함)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함)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3항).

직권조치 또는 조치 비용의 일부 보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4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

-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함)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정보는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제1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2항).

▪ 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예시(서울특별시 서초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구청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의무(「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 침수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

- 붕괴위험지구: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昇高) 및 고상식(高床式)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 침수 및 유실 등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급경사지가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 붕괴위험 급경사지의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급경사지의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위 붕괴위험지구 형질변경 제한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릅니다.

※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재난방지시설 및 자원 등의 관리

2.3.1. 재난방지시설 및 긴급안전점검

재난방지시설 관리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다음의 기관·단체·법인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함)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함)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 점검·관리해야 하는 재난방지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 사방시설
- 댐
-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 재난 예보·경보시설
- 항만시설
-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긴급안전점검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1항 후단).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

▪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해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긴급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5항).

2.3.2. 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등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재난관리자원의 구분

▪ 재난관리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내용
재난관리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 1.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3.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함)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4.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5.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재난관리재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재산
재난관리인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급망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체계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통신수단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마련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1항).

2.4. 매뉴얼 운영 및 재난대비훈련

2.4.1. 재난관리기준 및 매뉴얼

국가재난관리기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

> ▪ 이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3제1항 본문).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 및 활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활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4제1항).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

구분	내용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 ▪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음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 ▪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위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함)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
2. 그 밖에 위 1.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해당 고시 없음)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

위기상황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다중이용시설등의 관계인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제1항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제4조).

- 위기상황 대응조직 및 지휘체계
- 위기상황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 사항

-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기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9제2항).

※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3항).

※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2. 재난대비훈련

재난대비훈련 준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1항).

소관분야별 자체계획 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제2항).

재난대비훈련의 실시

재난대비훈련 실시 의무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이하 "훈련주관기관"이라 함)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함)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을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1항).

▪ 위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2항).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자체계획을 토대로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2항).

훈련내용, 방법 등의 통보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3항).

사전교육의 실시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5항).

훈련결과의 제출

▪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6항).

재난대비훈련에 대한 평가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4항).

-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및 개선·보완조치 요구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위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1항).

-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훈련평가 결과 통보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2항).

훈련 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

▪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제3항).

> ▪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대비훈련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제8항).
>
> ▪ 재난대비훈련 계획 및 훈련에 관한 가이드북, 참고자료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 『교육훈련 → 재난훈련 및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재해별 예방 대책

2.5.1. 풍수해

풍수해의 개념

풍수해(風水害)란

▪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함)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방재성능목표의 운용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함)·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2항).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범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

1.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4.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시설
7. 댐
8.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13.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14.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15. 우수유출저감시설
16. 고지(高地)배수로(「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목표 평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위의 방재시설 중 다음의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2조).

- 위 1.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위 3.의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 위 4.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 위 12.부터 16.까지의 방재시설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수방기준이란

▪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

수방기준의 제정

▪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수방기준 제정대상

▪ 위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구분	내용
시설물	■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해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하천시설 중 제방 √ 유수지(遊水池) √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 교량 √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지하공간	■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도로, 지하광장 및 공동구 √ 1종시설물·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 √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지구에 있는 건축물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2)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수방기준의 적용

▪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위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3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했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4항).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1항).

> ▪ 홍수방어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 중 다음의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개발사업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 재해위험 개선사업(「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그 밖에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서 정하는 재해경감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3항).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 ▪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 및 제14조의2제1항 전단).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 및 제14조의3제1항).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국립·공립 학교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2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2항).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3항).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아래의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1항).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2항).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 건축물(「건축법」 제2조)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관광진흥법」 제3조)
- 도로의 부속물
- 궤도시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
- 옥외광고물
- 전기설비
-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 도시철도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 등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3항).

재해지도·기록·정보 등의 보존 및 활용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의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 제21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침수흔적도	▪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으로서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함)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침수예상도	▪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재해정보 지도	▪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5항).

재난현황, 재해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행정안전부에서는 대국민 재난정보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제공을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심리 상담정보센터, 재난훈련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안전24(http://www.safekore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안전24에서는 재난정보, 행동요령, 안전지도, 교육훈련, 민방위, 재난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2. 설해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설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雪害) 발생에 대비하여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1항).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설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2항).

- 설해 예방조직의 정비
-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 설해 대비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 고립·눈사태·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 농수산시설의 설해 경감대책 마련
-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 그 밖에 설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친환경적 제설방안 시행 권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제4항).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1항).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예시(강릉시 고시 제2020-143호)

상습설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습설해지역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2에 의거 대설로 인하여 고립·눈사태·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상습설해지역 지정 대상지

고립 예상지역

구 분	위 치	주 민		지 정 사 유
		가구(세대)	거주자(명)	
고립 예상지역	면 △△리 993-3 일원	◎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면 △△리 1711 일원	◎	◎	
	면 1906-7 일원	◎	◎	
	면 △△리 418-1 일원	◎	◎	
	면 △△리 101 일원	◎	◎	

교통 두절 예상지역

구 분	시작지점 ~ 끝지점	취약유형	총길이(km)	지 정 사 유
교통 두절 예상지역 (상습결빙)	면 △△리 879-1 ~ 산2-10	고갯길	1.96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있을 위험요소를 예방하고자 함
	초교~△△회관 (△△로 103 ~ △△대로 145)	경사로	0.32	
	마트 ~ △△오거리 (△△길 2 ~ △△동 1000-2)	경사로	0.28	
	교 ~ △△조합 (△△동 194 ~ △△로 85)	경사로	0.35	

상습설해지역 지정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시행(「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3 제1항)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제4항).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내설설계기준 설정 및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

- 건축물
-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 교량
- 전기설비 중 송전·배전시설
- 항만시설
-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제11호 및 제12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 등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4제3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함)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

▪ 그 밖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서울특별시)

- 제설·제빙을 해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

·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함)

√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2.5.3. 가뭄, 폭염 및 한파

가뭄피해의 예방 및 경감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

▹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제2항 후단).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함)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제1항).

▪ 수자원관리자는 위의 조치를 하려면 수혜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제2항).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함)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2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제1항 본문).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제3항).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제1항).

-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제2항).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3제1항).

> ▪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예시(부산광역시)

▪ **폭염취약계층 지원**(「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제9조)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 선풍기 등 냉방용품

·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제10조)

시장은 다음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 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환경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파피해의 예방 및 경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의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4제1항).

- 한파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 지역별 한파대책 마련
- 한파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 한파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5제1항).

3. 자연재해 대응

3.1. 재난 예보·경보 체계

3.1.1.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등

재난 예보·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

재난 관련 위험정보의 통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2항).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필요 조치 요청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 전기통신사업자 중 다음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 시내전화 역무
  - √ 시외전화 역무
  - √ 국제전화 역무
  - √ 초고속인터넷 역무
  - √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 √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함)
-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 ※ 방송요청사항
>
> ▪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
>
> √ 기상상황
>
> √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
> √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
>
> √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다음의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1.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위 1.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위 1.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함)인 인터넷신문사업자

▹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 위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5항).

기상청의 재난 예보·경보·통지 실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전단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지진·지진해일·화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 이 경우 기상청장은 위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 및 제38조의2제5항).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의 표시를 위한 장치 구축 의무

▪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위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6항).

3.2. 재난사태선포 및 조치

3.2.1.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사태 선포

위기경보의 발령 등

위기경보 발령 대상 재난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자연재난

▹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단서).

위기경보의 종류

▪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심각 경보의 발령·해제 협의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3항).

위험정보의 통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4항).

재난사태 선포

재난사태 선포 대상 재난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한 조치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5항).

▹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 「유아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휴교 처분의 요청
-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재난사태의 해제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6항).

3.2.2. 응급조치 등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동원명령 등

응급조치

▪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3. 중에서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5. 및 7.의 응급조치만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3.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4.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5.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6.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7.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2항).

동원명령

▪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

-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 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2항).

대피명령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 위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2항).

위험구역의 설정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위 1.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2항).

강제대피조치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위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

통행제한 등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제1항).

▪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응원(應援)

▪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2항).

응급부담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음의 응급부담 절차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3.3. 긴급구조

3.3.1. 긴급구조활동

긴급구조통제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함)을 두며,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

■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합니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

·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

▪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제3항).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해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둡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1항).

▪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

긴급구조활동과 현장지휘 등

긴급구조활동

▪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1항).

▪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2항).

▪ 위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3항).

긴급구조 현장지휘

▪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합니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항).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3항).

▪ 중앙통제단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3조).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2. 위 1.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함)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5항).

▪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6항).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7항).

▪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연락관을 파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9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

▪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0항).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중앙통제단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1항).

▪ 위 종합평가결과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2항).

▪ 다만,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종합평가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후단).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이하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이라 함)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이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라 함)의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및 제3항).

- 화재·구조·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9
-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 그 밖에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번호자원관리계획에 따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제3항).

재난대비능력 보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1항).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

▪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함)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긴급구조교육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5항).

4. 자연재해 피해 복구

4.1. 재난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

4.1.1. 재난피해 조사

재난피해에 대한 조사

재난피해 신고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1항).

재난피해조사단 편성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3항).

▪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4항).

재난피해조사단의 임무

▪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사례 등 수집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의 작성
- 재난수습·복구 방안 검토
-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지방재난피해조사단 편성

▪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함)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제1항).

피해 조사기간

▪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및 별표).

구분		조사기간	그 밖의 사항
재난피해조사단		7일 이내	▪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지방재난피해조사단	공공시설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재난피해조사단이 운영될 경우에는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 이전이라도 재난피해조사단 운영이 종료된 날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조사기간을 각각 7일과 10일을 초과하면 안 됨 ▪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해야 함 ▪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재해 종료일은 해당 재난의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로 하며,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사유시설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조사결과의 보고

▪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4.1.2. 재해복구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자체복구계획 및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

▪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위 자체복구계획과 아래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3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

▹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 복구사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근간을 상실한 피해지역으로서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 위 자체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함)의 시행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제1항).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함)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제2항).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제1항).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제2항).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및 제14조의3제1항).

※ 위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 및 제14조의3제3항).

4.2. 특별재난지역

4.2.1.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5항).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

특별재난지역 공고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지원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구분	특별지원 내용
위 1. 및 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위 3.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지원금액, 내용 등의 확정

▪ 중앙대책본부장은 위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 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Q & A

Q. 태풍으로 인해 저희 집을 포함한 근처 많은 가옥이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비용 등의 지원

4.3.1. 비용부담과 손실보상 등

비용의 부담

비용부담의 원칙

▪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본문).

▪ 다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2항).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 응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 또는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1항).

▪ 위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손실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원명령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및 응급부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1항).

보상 협의

▪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해야 하며, 협의는 동원명령 등 또는 응급부담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재결신청

▪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동원명령 등 또는 응급부담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치료 및 보상

부상 치료, 사망·신체장애에 대한 보상금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함)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함)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

지급기준

▪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 부상을 입은 사람 및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상을 입은 사람,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장비 등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보상

-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2항).

- 장비 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

  -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 등의 교환가격
  -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 등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필요한 실비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포상

훈장 또는 포장 수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의2).

4.3.2. 복구비 지원

재난복구비 지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그 비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원명령(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지원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위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7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 전단).

복구비 등의 선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함) 중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1항제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함)·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함)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 주택 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지체 없이 거주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아래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3항).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 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복구비 등의 반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4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재난복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및 재해복구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

▪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 및 제4항).

> ▪ 그 밖에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